

의안번호	2219092
의 퇴 인	양부남의원
회 답 일	2026.9.7.
추계번호	26D272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증원되고,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4억 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30억 6,800만원(연평균 126억 1,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안 제41조)	12,387	12,084	12,455	12,838	13,232	62,996	12,599
위원회 위원수 증가 (안 제166조 및 안 제187조)	14.4	14.4	14.4	14.4	14.4	72	14.4
합 계	12,401	12,098	12,469	12,852	13,246	63,068	12,614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주민의 감사 청구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도록 함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홀수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수가 1명 늘어나게 됨	의무규정
3	안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등의 설치와구성등)	-분쟁조정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현행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의무규정

4	안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현행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변경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을 위촉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①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과 ②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5명을 위촉직으로 규정함 *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의무규정
5	안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국가 또는 시·도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 이관 요청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	(미대상) ○ 현재 실시 중인 사항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7월 ‘주민e직접’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을 통하여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 발급신청, 청구인 명부 서명 및 감사청구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등이 가능함
2	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3	안 제166조(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	
4	안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	
5	안 제199조의2(사무의 이관)	×	○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내용 및 지원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41조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추가재정소요는, 현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기준으로 법상 가능한 최대 인원을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두는 경우를 전제하여 개정안에 따른 증원 가능 인원을 추정하고, 증원 인원내에 대한 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추계함
- 현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국회도서관 지방의정보털(clik.nanet.go.kr) ‘의원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현행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하로, 개정안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은 의원 정원의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 올림하여 산출한 인원임

- 개정안에 따라 증가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은 시·도 5명, 시·군·구 125명임

[표 2] 개정안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추정

(단위: 명)

구분	현행	개정안	증가인원
시·도	464	469	5
시·군·구	1,442	1,567	1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시·도 및 시·군·구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은 별첨 자료 참고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1)」에 근거하여 시·도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군·구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제
- 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급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인 72,157천원을, 시·군·구 정책지원 전문인력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의 임기제공무원 7급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의 평균인 60,527천원²⁾을 적용하고, 수당으로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합산하며, 연봉과 수당을 합산하여 산출한 보수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
-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업무공간은 기존 지방의회 청사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⑦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6,606	57,708
7급(상당)	70,782	50,272

- 안 제166조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안 제187조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련하여서는 위원수 증가에 따른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
를 추계함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련) 현행법 상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위원장과 위원 5명 등 총 6명을 지방자치사무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³⁾,
개정안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 8명 등 총 9명을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을 지급하는 외부 민간위원이 3명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관련) 현행법 상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 수는 13명
이내, 이 중 4명을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전체 위원 수를 14명으로
하고, 이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을 9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에 따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외부 민간위원이 5명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연간 6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당 30만원⁴⁾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8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등 5명을 규정함

4) 기획예산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20만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10만원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금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⁵⁾을 적용하며,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20.5%⁶⁾)을 보수총액에 적용하여 산출함
 - 자산취득비는 추계 첫해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안 제41조)

- (보수) 앞서 전제한 바와 같이 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5명 증가, 시·군·구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125명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및 7급 평균 연봉액을 적용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87억 7,500만원 등 5년간 총 465억 9,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정책지원 전문인력 1인당 보수 추정(2026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보수액
시·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연봉	72,157
	수당	4,620
	합계	76,777
시·군·구 정책지원 전문인력	연봉	60,527
	수당	4,560
	합계	65,087

주: 수당에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배우자 1명 전제)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효율, 1인당 자산취득비(2026.3.)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3.5	3.0	3.0	3.0	3.0	3.0
기관부담금(%)	13.067	13.129	13.193	13.285	13.379	13.475
1인당 자산취득비(천원)	4,980	5,078	5,180	5,283	5,389	5,497

6) 인력운영비 39조 6,999억원, 기본경비등 8조 1,503억원(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 총규모에 대한 순계예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

[표 4]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보수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6 기준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구분	1인당 보수 (a)	증원 인원 (b)	연간 총액 (a×b)						
시·도	77	5	384	395	407	419	432	445	2,099
시·군·구	65	125	8,136	8,380	8,631	8,890	9,157	9,432	44,490
합계			8,520	8,775	9,039	9,310	9,589	9,877	46,590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관부담금) 보수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1억 5,200만원 등 5년간 총 61억 9,500만원으로 예상됨

- 추정된 보수액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신규채용 관련 연도별 기관부담 요율 적용

[표 5]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부담금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관부담금	1,152	1,192	1,237	1,283	1,331	6,19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기본경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인력운영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20.5%를 보수총액에 적용하면,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7억 9,900만원 등 5년간 총 95억 5,100만원으로 예상됨

[표 6]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기본경비	1,799	1,853	1,909	1,966	2,025	9,5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자산취득비) 증원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2027년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제할 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6억 6,000만원으로 예상됨

[표 7]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계: 2027~203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자산취득비	660	-	-	-	-	6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증원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3억 8,700만원 등 5년간 총 629억 9,600만원으로 예상됨

[표 8]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보수	8,775	9,039	9,310	9,589	9,877	46,590
기관부담금	1,152	1,192	1,237	1,283	1,331	6,195
기본경비	1,799	1,853	1,909	1,966	2,025	9,551
자산취득비	660	-	-	-	-	660
합 계	12,387	12,084	12,455	12,838	13,232	62,996

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수 증가(안 제166조 및 안 제187조)

- (회의참석수당) 개정안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40만원 등 5년간 총 7,200만원으로 추계됨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은 3명 증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은 5명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위원회는 연간 각 6회 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9]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수당 지급 횟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3명×연 6회)	18	18	18	18	18	90
	행정협의조정위원회 (5명×연 6회)	30	30	30	30	30	150
	소계(a)	48	48	48	48	48	240
회의참석수당(b)		0.3	0.3	0.3	0.3	0.3	0.3
계(a×b)		14.4	14.4	14.4	14.4	14.4	7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증원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24억 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30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안 제41조)	12,387	12,084	12,455	12,838	13,232	62,996
위원회 위원수 증가 (안 제166조 및 안 제187조)	14.4	14.4	14.4	14.4	14.4	72
합 계	12,401	12,098	12,469	12,852	13,246	63,068

주: 단수 조정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

[별첨] 시·도 및 시·군·구별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⁷⁾

－ 시·도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서울특별시	118	59	5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91	45	46
부산광역시	48	24	24
대구광역시	36	18	18
인천광역시	45	22	23
대전광역시	22	11	11
울산광역시	22	11	11
세종특별자치시	21	10	11
경기도	167	83	84
강원특별자치도	54	27	27
충청북도	38	19	19
충청남도	50	25	25
전북특별자치도	44	22	22
경상북도	64	32	32
경상남도	68	34	34
제주특별자치도	45	22	23
합계	－	464	469

－ 서울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강남구	25	12	13
강동구	21	10	11
강북구	14	7	7
강서구	23	11	12
관악구	23	11	12
광진구	14	7	7
구로구	16	8	8
금천구	10	5	5
노원구	21	10	11
도봉구	15	7	8
동대문구	19	9	10
동작구	17	8	9
마포구	19	9	10
서대문구	15	7	8
서초구	17	8	9
성동구	14	7	7
성북구	23	11	12
송파구	27	13	14
양천구	18	9	9
영등포구	17	8	9
용산구	13	6	7
은평구	19	9	10
종로구	10	5	5
중구	9	4	5
종랑구	17	8	9
합계	－	209	227

7) 지방의회의원 정수는 국회도서관 지방의정보털(clik.nanet.go.kr) ‘의원통계’ 자료를 기초

－ 전남광주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광산구	19	9	10
남구	12	6	6
동구	7	3	4
북구	21	10	11
서구	14	7	7
강진군	8	4	4
고흥군	12	6	6
곡성군	7	3	4
광양시	14	7	7
구례군	7	3	4
나주시	16	8	8
담양군	9	4	5
목포시	22	11	11
무안군	9	4	5
보성군	8	4	4
순천시	25	12	13
신안군	9	4	5
여수시	26	13	13
영광군	8	4	4
영암군	8	4	4
완도군	9	4	5
장성군	8	4	4
장흥군	7	3	4
진도군	7	3	4
함평군	7	3	4
해남군	11	5	6
화순군	10	5	5
합계	－	153	167

－ 부산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강서구	8	4	4
금정구	11	5	6
기장군	9	4	5
남구	13	6	7
동구	7	3	4
동래구	15	7	8
부산진구	19	9	10
북구	14	7	7
사상구	10	5	5
사하구	15	7	8
서구	7	3	4
수영구	9	4	5
연제구	11	5	6
영도구	7	3	4
중구	7	3	4
해운대구	20	10	10
합계	－	85	97

－ 대구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군위군	7	3	4
남구	8	4	4
달서구	25	12	13
달성군	12	6	6
동구	19	9	10
북구	21	10	11
서구	10	5	5
수성구	22	11	11
중구	7	3	4
합계	－	63	68

－ 인천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강화군	7	3	4
검단구	8	4	4
계양구	10	5	5
남동구	18	9	9
미추홀구	15	7	8
부평구	18	9	9
서해구	14	7	7
연수구	14	7	7
영종구	7	3	4
옹진군	7	3	4
제물포구	11	5	6
합계	－	62	67

－ 대전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대덕구	8	4	4
동구	10	5	5
서구	20	10	10
유성구	15	7	8
중구	10	5	5
합계	－	31	32

－ 울산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남구	14	7	7
동구	7	3	4
북구	9	4	5
울주군	10	5	5
중구	10	5	5
합계	－	24	26

－ 경기도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가평군	7	3	4
고양시	34	17	17
과천시	7	3	4
광명시	12	6	6
광주시	12	6	6
구리시	8	4	4
군포시	9	4	5
김포시	14	7	7
남양주시	21	10	11
동두천시	7	3	4
부천시	24	12	12
성남시	32	16	16
수원시	37	18	19
시흥시	16	8	8
안산시	19	9	10
안성시	8	4	4
안양시	20	10	10
양주시	9	4	5
양평군	7	3	4
여주시	7	3	4
연천군	7	3	4
오산시	8	4	4
용인시	34	17	17
의왕시	7	3	4
의정부시	13	6	7
이천시	8	4	4
파주시	16	8	8
평택시	20	10	10
포천시	7	3	4
하남시	10	5	5
화성시	31	15	16
합계	－	228	243

－ 강원특별자치도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강릉시	19	9	10
고성군	7	3	4
동해시	8	4	4
삼척시	8	4	4
속초시	7	3	4
양구군	7	3	4
양양군	7	3	4
영월군	7	3	4
원주시	26	13	13
인제군	7	3	4
정선군	7	3	4
철원군	7	3	4
춘천시	24	12	12
태백시	7	3	4
평창군	7	3	4
홍천군	8	4	4
화천군	7	3	4
횡성군	7	3	4
합계	－	82	95

－ 충청북도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괴산군	8	4	4
단양군	7	3	4
보은군	8	4	4
영동군	8	4	4
옥천군	8	4	4
음성군	8	4	4
제천시	14	7	7
증평군	7	3	4
진천군	8	4	4
청주시	45	22	23
충주시	19	9	10
합계	－	68	72

－ 충청남도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계룡시	7	3	4
공주시	12	6	6
금산군	7	3	4
논산시	13	6	7
당진시	14	7	7
보령시	12	6	6
부여군	11	5	6
서산시	14	7	7
서천군	7	3	4
아산시	17	8	9
예산군	11	5	6
천안시	29	14	15
청양군	7	3	4
태안군	7	3	4
홍성군	11	5	6
합계	－	84	95

－ 전북특별자치도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고창군	10	5	5
군산시	24	12	12
김제시	14	7	7
남원시	16	8	8
무주군	7	3	4
부안군	10	5	5
순창군	8	4	4
완주군	11	5	6
익산시	25	12	13
임실군	8	4	4
장수군	7	3	4
전주시	36	18	18
정읍시	17	8	9
진안군	7	3	4
합계	－	97	103

－ 경상북도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경산시	16	8	8
경주시	22	11	11
고령군	7	3	4
구미시	25	12	13
김천시	18	9	9
문경시	10	5	5
봉화군	8	4	4
상주시	17	8	9
성주군	8	4	4
안동시	18	9	9
영덕군	7	3	4
영양군	7	3	4
영주시	14	7	7
영천시	12	6	6
예천군	9	4	5
울릉군	7	3	4
울진군	8	4	4
의성군	13	6	7
청도군	7	3	4
청송군	7	3	4
칠곡군	11	5	6
포항시	33	16	17
합계	－	136	148

－ 경상남도

구분	의원정수	정책지원관 정원(현행)	정책지원관 정원(개정안)
거제시	16	8	8
거창군	11	5	6
고성군	11	5	6
남해군	10	5	5
밀양시	13	6	7
사천시	12	6	6
산청군	10	5	5
양산시	20	10	10
의령군	10	5	5
진주시	22	11	11
창녕군	11	5	6
창원시	45	22	23
통영시	14	7	7
하동군	11	5	6
함안군	10	5	5
함양군	10	5	5
합천군	11	5	6
합계	－	120	127